

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상담ISC) 참여기관(기업) 협약서

(사)전국고용서비스협회(이하, "ISC 운영기관" 이라 한다)와 (재)중앙자활센터 (이하, "참여기관(기업)기업" 이라 한다)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상담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(이하 "상담ISC") 사업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상담ISC 사업에 관한 운영기관과 참여기관(기업)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기능) 상담ISC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상담산업분야 인적자원 개발·관리·활용 등의 핵심기준 마련
2. 상담산업분야 인적자원 관련 현안 논의 및 의사결정
3. 상담산업분야 인력현황 분석 및 자료제공
4. NCS 및 NCS 기반자격, 일학습병행제 사업 등 수행
5. 그밖에 관련 산업분야의 인력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전략사업, 자율기획사업 추진

제3조(기관의 역할) ①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 및 'ISC 사업'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

1. 해당분야 참여기관(기업) 대상 ISC 사업 설명 및 홍보
2. ISC 사업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·운영
3. 운영위원회, 실무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·지원
4. ISC 사업 관련 보고서 작성 및 배포
5. 기타 ISC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

② 참여기관(기업)은 관련 법령 및 'ISC 사업'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

1. ISC가 개최하는 운영위원회, 실무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 회의체 참석
2. 제2조의 ISC 주요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
3. 위원회 결의 등 협의에 따라 필요시 인력, 공간 등 인프라 지원

제4조(성실의무) 운영기관과 참여기관(기업)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ISC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ISC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ISC 사업 종료이전에도 참여기관(기업)이 참여의사를 철회하거나 장기간 의사표현 없이 ISC 사업의 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9월 1일

(운영기관)

(사)전국고용서비스협회

주 소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219

대표자 : 원택용

(참여기관(기업))

(재)중앙자활센터

주 소 :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

대표자 : 김상균

